감정평가서

의 뢰 인 :	(주)바로저축은행장
건 명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00 외
번 호 :	지우1-240112-501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감정평가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 이외의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 전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지 우 감 정 평 가 법 인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5층(대치동, 신안빌딩)
TEL.(02)522-4001 FAX.(02)522-4016

1-240112-501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주 용 (인)

지 우 감 정 평 가 법 인 (주) 대표이사 주 용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백일십팔억팔천만원정(₩11,880,000,000.-)			
의 뢰 인	(주)바로저축은행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 무 자	-	제 출 처	(주)바로저축은행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코리아신탁주식회사 (수탁자)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4. 01. 12	2024. 01. 11 ~ 2024. 01. 12	2024. 01. 12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792.0	토지	792.0	15,000,000	11,880,000,000
건물	1,857.95	건물	-	-	-
		< 이 하 여 백 >			
합 계					₩11,880,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 용 산 (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평가목적

본건은 공매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개요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이용상황 (용도)	공부면적(㎡)	비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00 외	토지	사업부지 (오피스텔)	792.0	기호(1~3)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	1,857.95	기호(가~다)

※ 기호(가~다) 건물은 현황 멸실임.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4년 01월 12일로 하였음.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4.01.11. ~ 2024.01.12.이며, 실지조사시 대상물건의 존재여부, 공부 및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기타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본건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Ⅲ.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본건 토지의 감정평가방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및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대상물건에 적용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 토지는 상기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그 합리성을 비교·검토하였음.

3.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그 밖의 평가기준

- 본건 기호(1~3) 토지는 일단의 사업부지로서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바 일단지로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기호(가~다) 건물은 후첨 사진과 같이 현황 멸실임.

Ⅳ. 기타 검토 및 참고사항

1. 건축허가 사항

건축구분	신축
허가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11 (2022-3830244-1101-11)
건축주	그랜드지오종합건설 주식회사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지번	689-100 외 2필지
대지면적	792㎡
주용도	업무시설
건축면적 (건폐율)	477.75㎡ (60.32%)
연면적합계 (용적율)	8,145.23㎡ (788.49%)
건축허가일	2022.03.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사업 개요

사업명	안양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00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792㎡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용도	오피스텔 (56세대)
조감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Ⅴ. 토지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대상토지의 개요

[공시기준일 : 2023.01.01.]

기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개별 공시지가 (원/㎡)
1	안양동 689-100	대	291.6	일반상업	사업부지 (오피스텔)	중로각지	부정형 평지	4,382,000
2	안양동 689-101	대	205.3	일반상업				4,382,000
3	안양동 689-107	대	295.1	일반상업				4,382,000

2. 공시지가기준법

가. 산정개요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비교표준지 선정

1) 인근지역 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 2023.01.01.]

표준지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안양동 689-97	189.4	대	상업기타	일반상업	중로각지	사다리 평지	4,427,000
B	안양동 689-128	142.8	대	상업용	일반상업	광대한면	세장형 평지	5,563,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표준지 위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비교표준지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

표준지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안양동 689-97	189.4	대	상업기타	일반상업	중로각지	사다리 평지	4,427,000

다. 시점수정

지역	산정기간	용도지역	비고	시점수정치 (변동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23.01.01. ~ 2024.01.12.	상업지역	2023.01.01 ~ 2023.11.30 : 1.480 2023.11.01 ~ 2023.11.30 : 0.292 (1+0.01480)*(1+0.00292*43/30) ≒ 1.01905	1.01905 (1.905%)

라. 지역요인 비교

비교치 결정 의견	비교치
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에서 동일함.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	상업지역 중심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및 적합성
	자연환경	지반, 지질 등
획지조건	면적, 접면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깊이
		부정형지, 삼각지, 자루형 획지, 맹지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용적제한, 고도제한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2) 개별요인 비교치 결정(본건/표준지)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본건	표준지							
1~3	A	1.00	1.00	1.00	0.95	1.00	1.00	0.950
		- 획지조건 : 본건은 표준지에 비해 획지조건(면적 등)에서 열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가격 참고자료

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이용상황	가로조건	지가수준(원/㎡)	비고
상업용	대로변	25,000,000 내외	일반상업
	중로/소로변 (상급지)	20,000,000 내외	
	중로/소로변 (중급지)	15,000,000 내외	

나) 인근지역 평가사례

평가 사례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가로 조건	토지면적 (㎡)	기준시점	평가 목적	토지단가 (원/㎡)
1	안양동 1195-47	대 (상업용)	일반상업	중로 한면	309.1	2023.05.02.	담보	14,700,000
2	안양동 622-147	대 (상업용)	일반상업	소로 한면	251.5	2022.08.03.	일반거래	12,600,000
3	안양동 674-45 외	대 (상업용)	일반상업	광대 한면	270.4	2022.05.10.	담보	26,500,000
4	안양동 674-9	대 (상업용)	일반상업	중로 한면	158	2022.01.19.	담보	19,300,000
5	안양동 688-19	대 (상업기타)	일반상업	중로 각지	297.9	2021.11.30.	일반거래	13,9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평가사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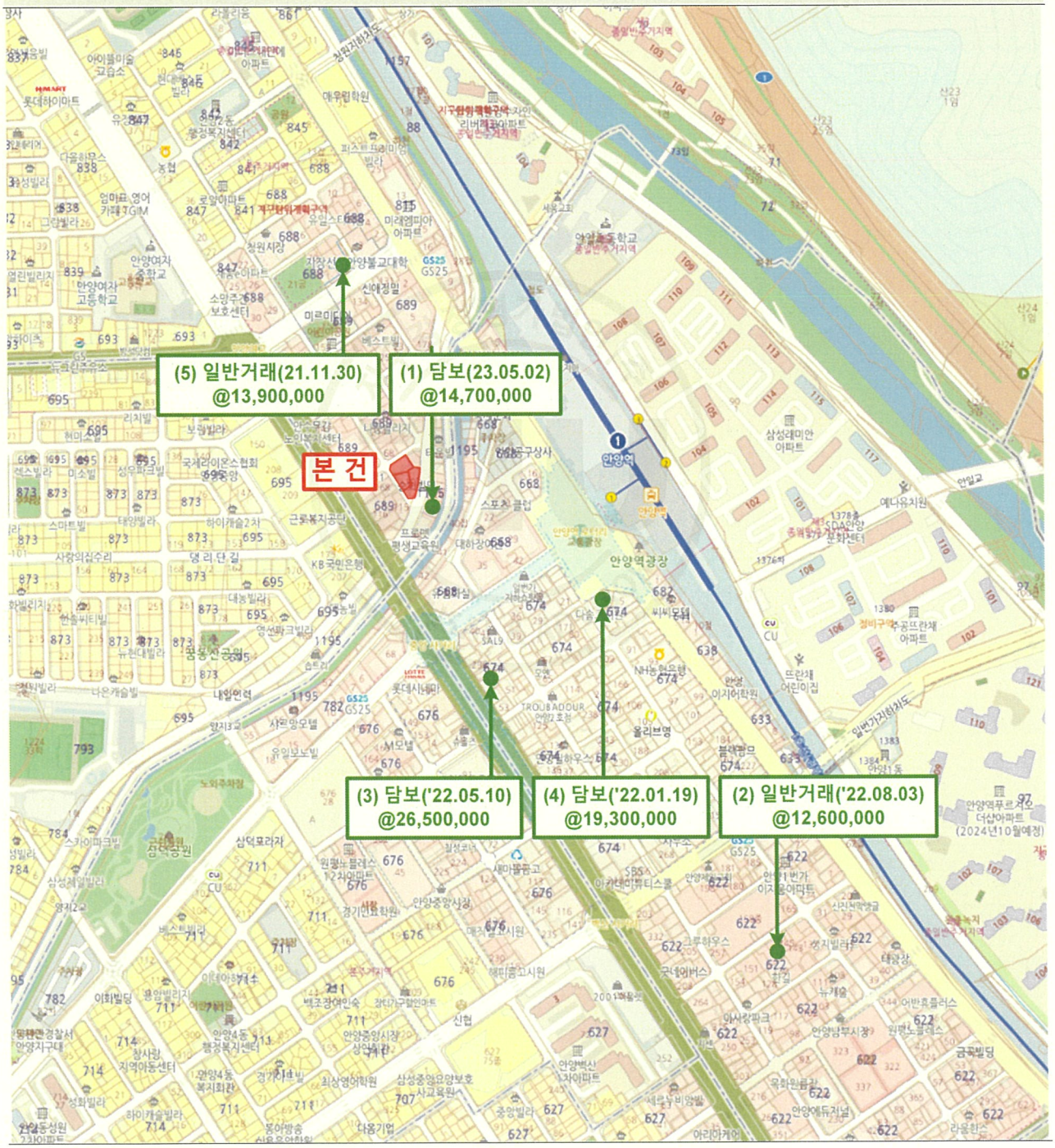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경매동향

지역	기간	용도	낙찰건수(건)	낙찰가율(%)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최근 1년간	아파트	21	79.7
		오피스텔(주거)	1	80.2
		주상복합(주거)	1	80.1

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가)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과 대법원판례(1998.07.10.선고 98두6067, 1993.09.10.선고 92누16300) 등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함.

나) 적용사례 선정

상기 평가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기준시점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평가사례를 적용사례로 선정하였음.

평가 사례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가로 조건	토지면적 (㎡)	기준시점	평가 목적	토지단가 (원/㎡)
2	안양동 622-147	대 (상업용)	일반상업	소로 한면	251.5	2022.08.03.	일반거래	12,6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사례 기준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격

표준지	사례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A	12,600,000	1.03433	1.000	1.12	1.08	1.10	0.93	1.00	1.00	1.237	16,121,274
	- 시점수정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상업지역" 지가변동률(2022.08.03. ~ 2024.01.12.)을 적용하였음. - 표준지는 사례 대비 가로조건(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접근성 등), 환경조건(인근환경 등)에서 우세하나,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열세함.										

라)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A	4,427,000	1.01905	1.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4,511,334
-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만을 반영하였음.											

마) 사례 기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표준지	ⓐ 사례 기준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가격(원/㎡)	ⓑ 기준시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원/㎡)	격차율(ⓐ÷ⓑ)
A	16,121,274	4,511,334	3.57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정치 결정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된 격차율을 참작하되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평가사례, 경매동향 및 평가목적과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함.	표준지(A) : 3.50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구분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본건	표준지							
1~3	A	4,427,000	1.01905	1.000	0.950	3.50	15,000,187	15,000,000

※ 결정단가는 사사오입하여 십만원 단위까지 표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

가. 산정개요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 등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비교사례 선정

1) 인근지역 유사 거래사례

거래사례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가로조건	토지면적 (㎡)	거래시점	토지단가(원/㎡) (거래금액(원))
1	안양동 674-75	대 (상업용)	일반상업	소로한면	141.8	2022.05.26.	21,800,000 (3,200,000,000)
	- 건물가격(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조, 1984.09.01.) 전층 : 234,000원/㎡(900,000원/㎡ × 13/50) × 489.68㎡ ≒ 114,585,120원 - 토지단가 : (3,200,000,000원 - 114,585,120원) / 141.8㎡ ≒ 21,800,000원/㎡						
2	안양동 674-9	대 (상업용)	일반상업	중로한면	158	2022.02.10.	20,400,000 (3,400,000,000)
	- 건물가격(근린생활시설 등, 철근콘크리트조, 1984.12.31.) 전층 : 234,000원/㎡(900,000원/㎡ × 13/50) × 751.58㎡ ≒ 175,869,720원 - 토지단가 : (3,400,000,000원 - 175,869,720원) / 158㎡ ≒ 20,400,000원/㎡						
3	안양동 676-153	대 (주상기타)	일반상업	소로한면	317.7	2020.12.04.	14,500,000 (4,600,000,000)
	- 매매 후 기존건물 철거함.						

※ 토지단가는 사사오입하여 십만원 단위까지 표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거래사례 위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사례선정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상기 거래사례 중에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거래시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거래사례를 본건에 적용할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거래 사례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가로조건	토지면적 (㎡)	거래시점	토지단가 (원/㎡)
1	안양동 674-75	대 (상업용)	일반상업	소로한면	141.8	2022.05.26.	21,800,000

다. 사정보정

보정치 결정 의견	보정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고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별도의 사정보정요인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00

라. 시점수정

거래 사례	지역	산정기간	용도지역	비고	시점수정치 (변동률)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2022.05.26. ~ 2024.01.12.	상업지역	(1+0.00395*6/31)*(1+0.00382)*(1+0.00376)*(1+0.00341)*(1+0.00294)*(1+0.00352)*(1+0.0024)*(1+0.00277)*(1+0.01480)*(1+0.00292*43/30) ≒ 1.04321	1.04321 (4.3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지역요인 비교

비교치 결정 의견	비교치
대상 토지는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에서 동일함.	1.000

바. 개별요인 비교

구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격차율
본건	거래 사례							
1~3	1	1.12	0.85	0.75	0.90	1.02	1.00	0.655
		- 가로조건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 접근조건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 환경조건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인근환경 등에서 열세함. - 획지조건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면적, 형상 등에서 열세함. - 행정적조건 :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도시계획시설(철도) 저촉 등에서 우세함.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결정

구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본건	거래 사례							
1~3	1	21,800,000	1.000	1.04321	1.000	0.655	14,895,996	14,900,000

※ 결정단가는 사사오입하여 십만원 단위까지 표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Ⅵ.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1. 적용단가의 결정

가. 시산가액 산정결과

기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원/㎡)
1~3	15,000,000	14,900,000

나. 적용단가 결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하게 산정되어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적용단가를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의 결정

기호	소재지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안양동 689-100	792.0	15,000,000	**11,880,000,000**	일단지
2	안양동 689-101				
3	안양동 689-107				

※ 기호(가~다) 건물은 현황 멸실임.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00	대	일반상업지역	291.6	792.0	15,000,000	11,880,000,000	일단지
2	〃	689-101	대	일반상업지역	205.3				
3	〃	689-107	대	일반상업지역	295.1				
가	〃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4번길 9-10	689-10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라멘조 슬래브지붕 3층					
				1층	162.41	-	-	-	멸실
				2층	162.41				
				3층	129.36				
				지층	162.41				
나	〃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4번길 9-6	689-10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알씨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3층					
				1층	120.82	-	-	-	멸실
				2층	114.30				
				3층	96.93				
				지층	128.80				
다	〃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24번길 13	689-107	상가주택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층	166.335	-	-	-	멸실
				1층	166.335				
				2층	157.83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3층	149.325				
				4층	140.685				
	합 계			< 이 하	여	백 >		₩11,880,000,0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8. 임대관계
3. 형태 및 이용상황	6. 제시목록외의 물건	9. 기타 참고사항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1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이 밀집한 역세권내 상업지대임.

2.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 양호함.

3. 형태 및 이용상황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사업지(오피스텔)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동측, 남서측, 북서측으로 각각 노폭 12m, 6m,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8. 임대관계
3. 형태 및 이용상황	6. 제시목록외의 물건	9. 기타 참고사항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6. 제시목록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

8. 임대관계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4. 인접 도로상태	7. 공부와의 차이
2. 교 통 상 황	5.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제한상태	8. 임대관계
3. 형태 및 이용상황	6. 제시목록외의 물건	9. 기타 참고사항

9. 기타참고사항

-

1-240112-501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00 외

1-240112-501.1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89-100 외

지적개황도

축척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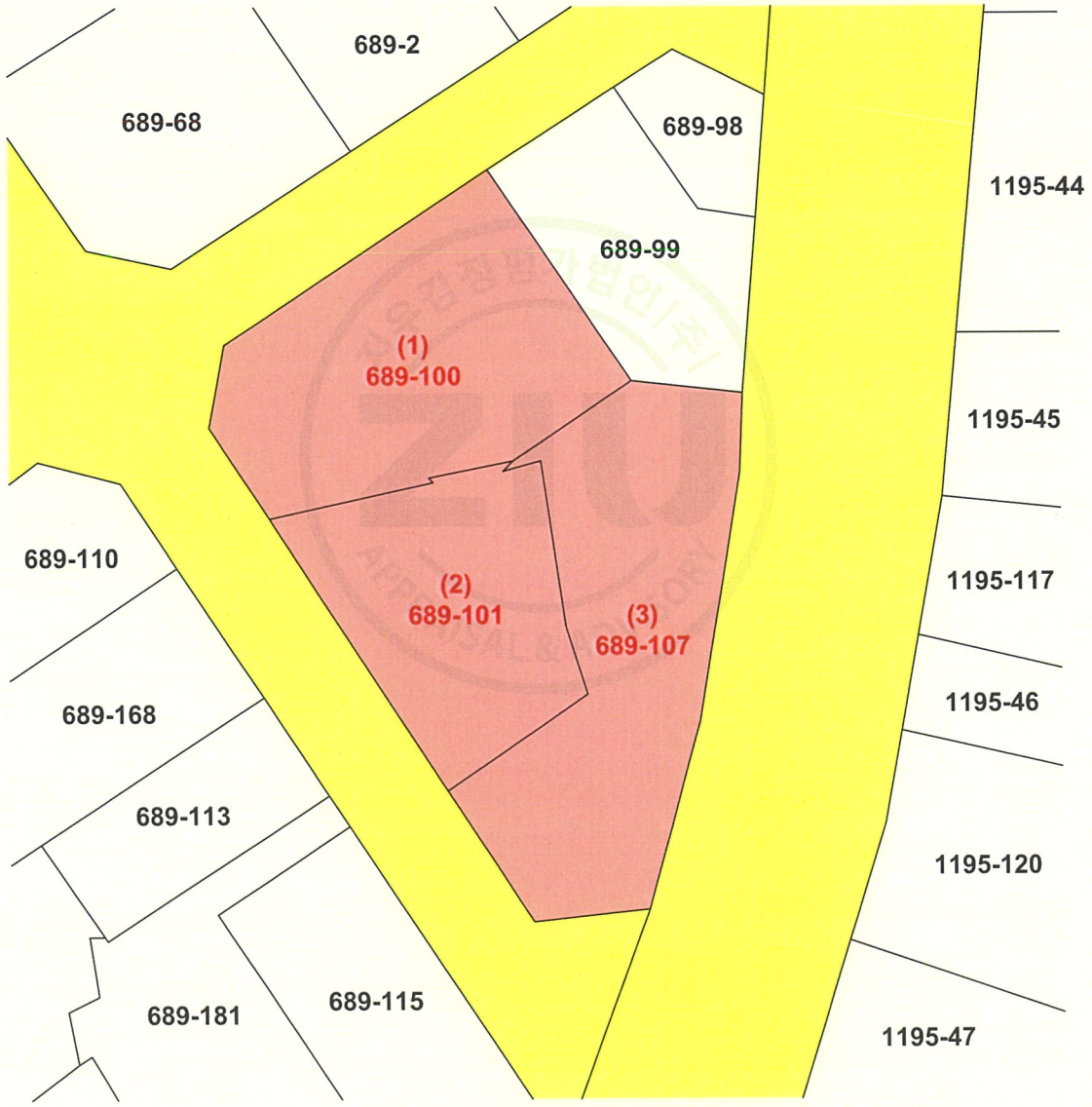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 본건 주변 (남동측) 】

【 기호(1) 토지 】

사 진 용 지

【 기호(2) 토지 】

【 기호(3) 토지 】

사 진 용 지

【 본건 현황 】

APPRAISAL & ADVISORY